



재심 요구서

주차 위반, 영상 단속 위반 또는 주행중 위반에 대한 청문회에서 귀하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귀하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 일 내에 재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지침을 자세히 읽고 이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1. 귀하의 요구서는 반드시 청문회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DMV 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2. 재심 요구의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새로 발견된 또는 새로 입수된 관련 증거
 - 방어를 위한 추가 증거의 필요성
 - 청문회 심사관의 진행상 오류 가능성 - 예: 판결의 바탕이 되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지하지 않음, 판결의 바탕이 되는 내용으로서 법적으로 인지된 사실을 귀하에게 알리지 않음.
 - 사안에 대한 추가 심의 필요성.
3. 이 양식과 증거는 다음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DMV
 Adjudication Services
 Attn: Request for Reconsideration
 PO Box 37135
 Washington, DC 20013

결정 내용은 180 일 이내에 우편으로 귀하에게 통지됩니다. 귀하의 재심 요구가 거절될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교통 심사 이의신청 위원회(Traffic Adjudication Appeals Board)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명 (인쇄체)	주소	일자
서명 ➔		

본 신청서에 허위 이름 또는 주소를 기입하거나 알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은 DC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1,000 달러 이상의 벌금, 180 일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D.C. 법률 §22-2405).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www.dmv.dc.gov 를 참고하거나 DC 시내 전화 311 번 또는 202-737-4404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DC 정부당국이나 공무원의 낭비, 부당행위, 남용행위를 보고하려면
 DC 감찰국(Office of the DC Inspector General) 전화 1-800-521-1639 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